

2024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홍보 계획(2차)

1 홍보 및 신청(접수) 개요

- 시범사업 신청(접수)기간: 2024. 2. 28. ~ 3. 4. 18:00까지
- 신청대상: 사업 희망 농업인(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)
- 신청(접수)방법: 제주농업기술센터 방문 신청 접수(특화작목육성 760-7753)
- 지원대상 및 지원 형태: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운영 지침에 따름
- 제출서류: 공통 양식과 사업별 추가 양식 활용

< 신청서류 >

○ 기본서류

- 사업신청서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농지대장(임차 및 토지 소유자 등 확인 가능한 사항), 지방세납세증명서, 민간보조금시스템 사업 이력 확인 내역

○ 추가서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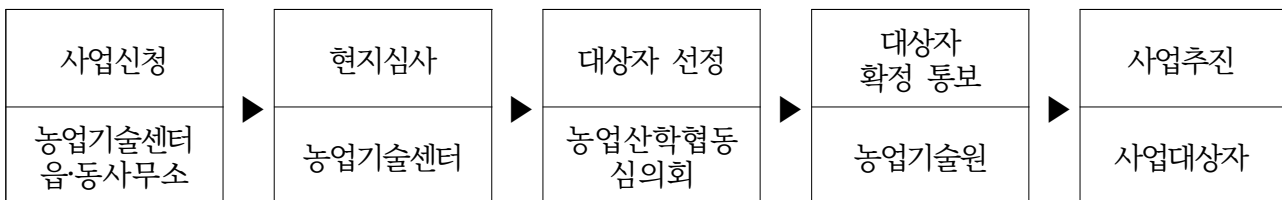
- 소득금액증명원, 토지대장, 등기부등본(건물 등 시설 관련 사업)
- 졸업증명서(농과계학교 졸업 시), 농업인단체임원활동경력서
- 부모의 사업장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신청할 경우 영농승계확인서
- 농업인 교육 이수 확인서(최근 3년간), 농업인상 수상 사본
(농업기술원, 농업마이스터대학, 감귤대학 등)

※ 생력화 등 농업기계 투입 관련 사업은 농지 대장 대신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으로 갈음. 여기서, 농기계는 주 농기계 부착용 부속기계 및 단일 보급 품목을 지칭함

2 2024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일정

- 2024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2차 공고 및 접수: 2024. 2. 28. ~ 3. 4.
- 서류 확인 및 현지 심사: 2024. 3. 5. ~ 3. 6.
-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심의회 상정 의결: 2024. 3. 8.
- 사업 추진: 2024. 3. ~ 11월
- 사업 평가 : 2024. 6 ~ 12월(중간 및 결과 평가 각 1회)

3 대상자 선정 절차



4 대상자 선정 기준

- 해당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새 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하여 포장의 위치는 도로변의 포장을 우선 선정
-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천 의지가 강한 농업인, 영농법인, 생산자 단체, 품목별 연구회 등 지도력을 겸비한 자
 - 심사 결과 동점인 경우 연령이 낮은 농업인 우선 선정
- 최근 시범사업 추진 상황, 보조사업 수혜 여부 등
 - 시범사업 신청 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또는 부부인 경우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보조사업 수혜 여부에 따라 대상자 선정(단, 시범사업 신청 사업장 지번이 다른 경우에는 수혜 여부에서 동일인 간주 예외)

＜ 사업대상 제외자 ＞

- 전년도 20백만원 이상 보조금 수혜자 및 최근 2년간 연속 보조금 수혜자(단,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제외)
- 전년도 1억원 이상 보조금 수혜 영농법인 등 생산자 단체 및 최근 2년 연속 보조금 수혜 영농법인 등 생산자 단체(단,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제외)
- 3년 이내 보조사업 추진하던 중 보조금 교부 결정(시범사업자 통지) 이후 포기하거나, 목적 외로 부당 사용하여 보조금 회수 및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(배우자 포함).
- 농업 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(시범사업 신청자 기준)
 - 농협 상근임직원, 공무원, 교사, 공기업,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
 - 농업 외 기타소득이 37백만 원을 초과하는 자
- 이전 지원내용이 유사한 동일사업 대상자
 - ※ 단, 시범사업 특성 상 연차적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은 예외 적용
- 현지 심사 결과 평가 점수가 40점 이하인 자
- 감귤분야사업: 신규 조성 감귤원 (다만, 신규 조성한 다음 년도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는 예외로 함)

- 기 지원받은 시범사업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신청자는 사업대상자 제외
- 서류심사 및 현지 심사 등을 통하여 사업 대상 요건, 선정 기준 이행
- 기타 사업별 필요한 항목을 배점 기준으로 설정하여 대상자 선정

2024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2차 신청

구분	사 업 명	사업량	사 업 비(백만원)		
			합 계	보 조	자부담
합 계	1 사업	1	144	100	44
특화 작목 육성	용도별 국내 육성 보리품종 생산·가공 연계 보급 활성화 시범	1	144	100	44

☐ 주요사업 내용

사 업 명	사업내용(지원내역)
용도별 국내 육성 보리 품종 생산·가공 연계 보급 활성화 시범	○ 선별시설(정맥기, 분쇄기 등), 농자재 등

사업 세부 추진계획

1

용도별 국내육성 보리품종 생산·가공연계 보급 활성화 시범

(문 의 : 제주농업기술센터 임충석, 760-7753)

☐ 목 적

- 보리 안정생산 및 가공 연계로 제주지역 6차 산업화 및 소비시장 활성화
- 고기능성 색깔보리 지역 특산화로 품질 고급화를 통한 가격·품질 경쟁력 강화

☐ 사업개요

- 사업기간: 2024년 1 ~ 12월
- 사업량: 1개소 10ha 내외
- 총사업비: 144,000천원(보조 100,000, 자부담 44,000)
 - 부담비율: 보조 70%, 자부담 30%
- 사업내용
 - 원료곡 선별 및 저장시설(정맥기, 분쇄기 등)
 - 신품종 종자 증식 및 보급 확산을 위한 농자재, 농기계 등
 - ※ 사업비 50%를 초과하는 단일품목 농기계 구입 불가(트랙터, 범용 콤파인 등)
 - ※ 소모성 농자재(농약, 비료 등) 지원은 최소화(30% 이내)

☐ 사업대상

- 보리 생산, 수매 및 가공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)
 - ※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 제35조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에 적합한 농업법인
 - ※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의거 농업경영체 등록
 - ※ 지방세 체납자는 제외

☐ 시범요인

- 갈변 적은 보릿가루 및 색깔보리 이용 가공 제품 개발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
- 신품종 보리 보급확산 및 안정생산 기반 조성

☐ 기대효과

- 가공용 보리 신품종 조기 보급을 통한 기존 장기 재배 점유 품종 대체
- 보리 신품종(색깔보리) 가공산업 확대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

시범사업 현지심사표

□ 사업신청자 : (대표 , 연락처 :)

조사항목	조 사 내 용	배점	점수	확인내용
농업법인 지원요건	○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	여/부		해 당 되 지 않는 경우 심사 제외
	○설립 후 운영 실적 1년 이상	여/부		
	○농업법인의 목적 외 사업 여부	여/부		
	○농업경영체 등록 여부	여/부		
보조사업 수혜여부	○2년간 시범사업 수혜여부 - 미 수혜(25), 5백만원 미만(15), 10백만원 미만(10) 15백만원 미만(7), 20백만원 미만(5)	25		
자부담 확보여부	○자부담 확보여부 - 기 확보된 경우(15) - 향후 확보계획이 명확히 수립된 경우(10)	15		통장사본, 회의록 등
사업부지 확보여부	○사업부지(설치장소) 확보여부 - 보조사업신청자 명의의 사업부지 확보(10) - 타인 소유 사업부지를 사업착공 전까지 보조 사업자 명의로 취득 가능한 경우(5) - 타인 소유의 부지 확보(임대차)(3)	10		등기부등본, 매매계약서 등
농산물 확보여부	○자체공급 물량 확보(보리 생산면적) - 10ha 이상(20), 8~10ha 미만(10) ○외부공급(계약체결) 물량 확보 - 10ha 이상(10), 8~10ha 미만(5)	20		계약서 등
생산·판매 실적	○가공식품 생산·판매실적 - 판매실적 5천만원 초과(20), 5천만원 이하(15) 가공식품 개발 예정(10)	20		
사업참여 농가수	○사업참여 인원 - 10명 이상(10), 6~10명 미만(8), 5명 이하(5)	10		
합 계		100		
가점사항	○여성사업자(대표), 청년사업자('84.1.1. ~ '06.12.31.)(10)	10		
총 계	총점(기본점수 + 가점)	110		

□ 조사자 의견

○

2024. . .

조 사 자 직 : 성명 : (인)
직 : 성명 : (인)

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

시범사업 신청서

사 업 명			용도별 국내육성 보리품종 생산·가공연계 보급 활성화 시범			신청면적	ha
신 청 자	단 체 명					등록번호	
	소 재 지					회 원 수	
	대 표 자	성명		생년월일		자택번호	
						휴 대 폰	
		주소					
신 청 내 용	사업내용						
	사 업 비 (천원)	계		보 조		자 담	
본인은 『개인정보 보호법』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, 제17조(개인정보의 제공)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촌진흥청 및 농업기술원,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집·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. □ 상기와 같이 시범사업을 신청합니다. 2024년 월 일 신 청 자 : (직인)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							
※ 첨부서류 - 기본서류 : 단체소개서, 법인등기부등본(재무제표, 조합원 명부),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등록증(해당시), 사업참여자 명단 및 사업동의서(회의록 등), 사업부지 확보내역(토지 등기부등본 등), 지방세납세증명서, 민간보조금시스템 사업이력 확인 내역 (영농조합법인)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조합원 5인 이상 농업인 확인 서류 (농업회사법인)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농업인 출자지분 1/10 이상 확인 서류 - 추가서류 : 농산물 확보 증빙 서류, 생산·판매 실적 증빙 서류							

〈 별표 1 〉

단체 소개서

[단체명 :]

주소 및 연 락 처	주 소	(우 63056)		
	연 락 처	• 전화 : • 홈페이지 : • 팩스 : • E-Mail :		
등록 및 인력현황	등록기관		등 록 일	
	대 표 자	(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)	• 사무국 직원수 : 명 (사무국장, 행정부장, ..)	
	회 원 수			
설립목적	• 우리 사회의 ○○○○와 균형있는 ○○○○을 실현하기 위한 ○○○○을 전개함으로써 ○○○○○○ 기틀 마련 ※ 첨부 :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			
단체연혁	• ‘81.11. 8 ○○○ 설립(창립) • ‘88. 6.15 ○○○○ 사단법인 설립허가 • ‘99. 7.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			
2024년 예산현황	• 예산총액 : 천원(보조금 : 천원, 자체수입 : 천원) • 재원구성(100%) : 회비수입(%), 기부금 및 모금활동(%),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(%), 사업수익(%), 기타(%)			
2023년 주요사업	• “정관/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” • 2~3건 작성 • 별지작성 가능			
2024년 주요사업 계 획	• 2~3건 작성 • 별지작성 가능 •			

〈 별표 2 〉

농업인단체 임원(품목별연구회) 활동
경력확인서

인 적 사 항	성 명		생년월일	. . .
	주 소			
단체 활동 사항	농업인단체 (품목별연구회)	직책	활동기간	비고
			~	
			~	
			~	
			~	
			~	

※ 비고 : 중앙, 도, 시, 읍면동, 마을 단위 사항 기재

※ 경력인정 사항 : 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농업인단체, 품목별연구회에 한하
며, 사설단체는 인정 불가

위와 같이 농업인단체(품목별연구회)활동 경력사항을 제출함.

2024. . .

확인자 : 직

성명 (인)

발급기관 :

(직인)

시범사업장 농업인 교육장 활용 동의서

☐ 동의자 인적사항

사업자(단체)		사업자번호 (생년월일)	
대표자(성명)		전화번호	
신청사업명			

위 본인은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 추진 시 사업장을
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

2024. . .

동 의 자 : (날인,서명)

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

〈 별표 4 〉

영 농 승 계 확 인 서

☐ 영농기반 확보실적(계획 포함)

○ 농지 및 시설물의 대지

지번	지목	면적	확보전 소유자(관계)	확보일정	확보형태

○ 시설물

지번	시설물명	면 적	확 보 전 소유자(관계)	확보일정	확보형태

영농승계확인서의 일정에 의하여 영농기반을 에게 승계
시킬 것을 확인합니다.

작성일 : 2024년 월 일

신청자 : (인)

확인자 : 주소 : 관계 : 부 성명 : 김○○(인)

확인자 : 주소 : 관계 : 형 성명 : 김○○(인)

확인자 : 주소 : 관계 : 제 성명 : 김○○(인)

* 농지 및 시설물이 확인자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 첨부

작성 시 주의사항

* 본인 소유 분은 100% 영농기반으로 인정하고, 직계존속이 영농계획서와 영농승계
확인서에서 승계하기로 약속한 면적은 50%만 영농기반으로 인정

(단,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 전에 확보한 면적의 50%는 영농승계(상속, 증여)가 이뤄져야 함)

* (예시) 아버지의 영농기반 면적이 4ha이고 아들에게 1ha를 승계할 것을 확약한 경우 영농기반 평가시 0.5ha를 영농기반으로 인정하고, 산업기능요원 편입전에 0.5ha에 대한 영농승계가 이루어야함(아마지, 0.5ha는 편입 후 후계농산업기능요원 종료 전 6개월 전까지 이뤄져야 함)